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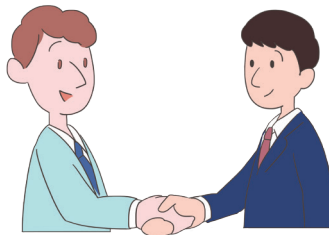
외국인 근로자 고용 매뉴얼



도쿄도 도민안전추진본부

목차

머리말	1
고용할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	2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3
체류카드란?	4
체류카드의 위변조 방지 대책	5
체류카드 확인 방법	6
체류자격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8
자격외활동허가에 대해서	9
기타 확인 서류	10
가방면이란?	11
고용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12
고용 후의 신고	14
체류 신청 절차의 온라인화	14
불법 취업자를 고용하면	15
자주 하는 질문	16
외국인 고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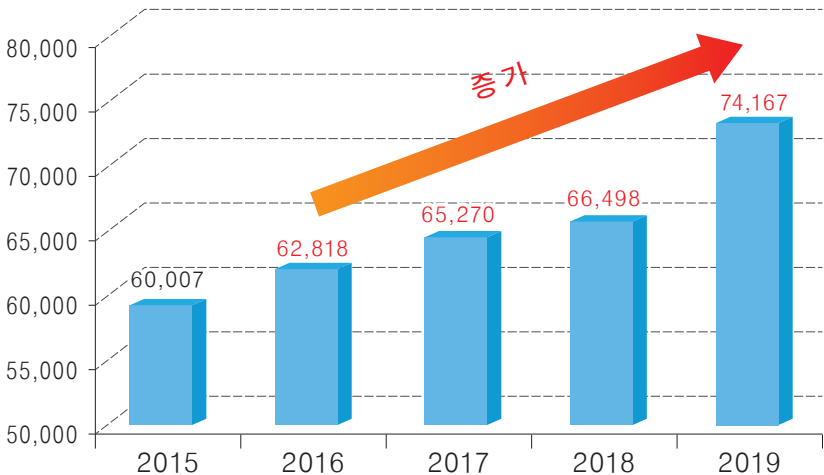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여러분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입관법)으로 규정된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일본에서의 취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외국인을 고용할 때, 체류카드 등으로 취업이 허가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18년 10월 현재 외국인 근로자 수는 약 146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외국인 불법 체류자 수는 2019년 1월 현재 약 7만 4천 명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불법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쿄도는 사업주 여러분께서 외국인을 고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바르게 이해하고, 동시에 「불법 취업을 허용하지 않는 환경 만들기」에 협조를 구하고자 본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수의 추이



출처: 출입국 체류 관리청

고용할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경우의 외국인은 취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1

불법 체류자나 강제 퇴거자인 경우

(예)

- 불법 체류자(오버 스테이저)나 밀입국한 사람
- 강제송환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

2

취업이 허가되지 않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

(예)

- 관광 등의 단기 체재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
-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유학생이나 난민인정 신청자

3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허가된 범위를

벗어나 일하는 경우

(예)

- 외국요리 요리사나 어학 학교의 선생님이 공장 등에서 단순 근로자로서 일하는 경우
- 허가된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유학생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1

먼저, 체류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P4-P5



2

다음으로,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P6-P7



3

또한,
「취업제한의 유무」,
「자격외활동허가의 유무」,
「지정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P6-P13



4

마지막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후에는 반드시 헬로워크
(공공직업안정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P14

체류카드란?

체류카드는 일본에 중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교부되는 것으로, **특별영주자**를 제외하고, 체류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체류카드 교부 대상자(「중장기 체류자」라 합니다)는 다음 ①~⑥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 ① 「3개월」 이하의 체류기간이 결정된 분
- ② 「단기체재」 체류자격이 결정된 분
- ③ 「외교」 또는 「공용」 체류자격이 결정된 분
- ④ 「특정활동」 체류자격이 결정된 대만일본관계협회의 본국 사무소(타이베이 주일 경제문화대표처 등) 또는 주일 팔레스타인 총대표부의 직원 또는 그 가족
- ⑤ 특별영주자
- ⑥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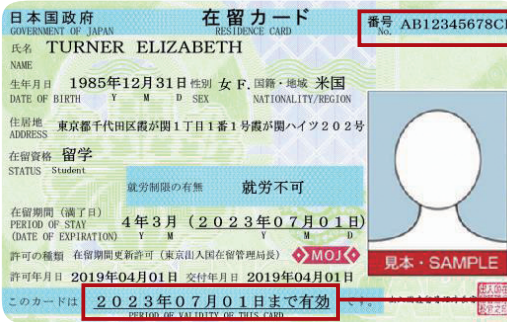
교부 대상자의 예

- 일본인과 결혼한 분
- 일본계인 분
- 기업 등에서 일하고 있는 분
- 기능실습생
- 유학생
- 영주자 등

교부 대상자가 아닌 예

- 관광객
- 외교관
- 불법 체류자 등

견본



체류카드번호

유효기간

체류카드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영주자·고도전문직 2호인 분

- 만 16세 이상인 분 교부일로부터 7년간
- 만 16세 미만인 분 만 16세의 생일까지

영주권자·고도전문직 2호 이외의 분

- 만 16세 이상인 분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 만 16세 미만인 분 체류기간의 만료일 또는 만 16세의 생일 중 빠른 날까지

체류카드의 유효기간 갱신 등에 대해서는 가까운 출입국관리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카드의 위변조 방지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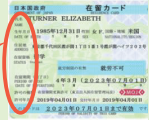
도안이 녹색으로 변합니다.

카드를 상하 방향으로 기울이면 MOJ 문자 주위의 도안이 분홍색에서 녹색으로 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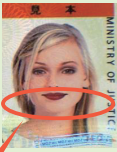


왼쪽 끝이 분홍색으로 변합니다

카드를 상하 방향으로 기울이면 색이 녹색에서 분홍색으로 변합니다.



홀로그램이 3D처럼 움직입니다



카드를 좌우로 기울이면 MOJ 홀로그램이 3D처럼 좌우로 움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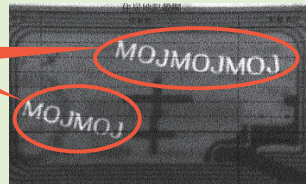
문자의 흑백이 반전됩니다

은색 홀로그램은 보는 각도를 90도 변경하면 문자의 흑백이 반전됩니다.



카드의 문자가 비쳐 보입니다

어두운 장소에서 카드 앞면 쪽에 강한 빛을 비추어 들여다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MOJMOJ...」 문자가 비쳐 보입니다.



위조에
주의

체류카드 등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위조된 체류카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청 홈페이지의 「체류카드 등 번호실효정보 조회」에서 체류카드 등의 번호 등 필요사항을 입력하면 입력된 카드번호가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lapse-immi.moj.go.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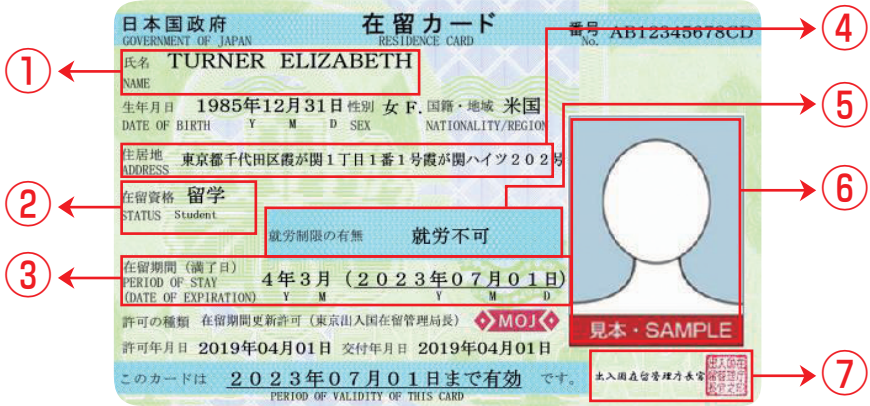
또한, 출입국관리청의 홈페이지에서 체류카드 등의 설명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체류카드 등의 IC 칩에 기록된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제품이 개발·시판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읽어낸 이미지와 카드면을 비교함으로써 진짜 체류카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immi-moj.go.jp/news-list/120424_01.html



체류카드 확인 방법

견본·앞면



①	성명	성명은 로마자 표기가 원칙이지만, 성명에 한자를 사용하는 분은 한자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칭 등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②	체류자격	체류자격이 없는 분에게는 카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③	체류기간 (만료일)	체류기간 중에는 만료일까지 일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경과된 분은 불법 체류가 됩니다. 단, 신청 중(⑨ 참조)인 분은 만료일로부터 2개월을 경과할 때까지 또는 신청결과가 나올 때까지 ②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④	주거지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뒷면에 기재됩니다.
⑤	취업 제한 여부	취업 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예와 같이 기재됩니다. 「就労制限なし」(취업 제한 없음) →취업 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在留資格に基づく就労活動のみ可」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활동만 가능) →②의 체류자격에 규정된 취업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指定書により指定された就労活動のみ可」 (지정서에 기재된 취업활동만 가능) →지정서(10페이지 참조)에 취업활동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지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就労不可」(취업 불가)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단, 뒷면의 자격외활동허가란(⑧ 참조)이 「허가」로 되어 있으면, 기재 내용의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⑥	얼굴 사진	체류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만 16세의 생일까지로 되어 있는 카드에는 사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먼저 체류카드를 확인!

건본·뒷면

住居地記載欄		
届出年月日	住居地	記載者印
2019年4月1日	東京都港区港南5丁目5番30号	東京都港区長
資格外活動許可欄		在留期間更新等許可申請欄
許可: 原則週28時間以内・風俗営業等の従事を除く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中

8

9

10

건본

在留カード後日交付
Residence card will be
issued at a later date
日本国入国審査官
Immigration Inspector, Japan

⑦ 교 부 자	2019년 3월 31일까지 교부된 체류카드에는 「법무대신」(법무부장관)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⑧ 자격외활동 허가란	허가를 받은 경우, 이 칸에 다음 예와 같이 기재됩니다. 「許可:原則週28時間以内・風俗営業等の従事を除く」 (허가: 원칙 주 28시간 이내·풍속영업 등의 종사 제외) →아르바이트 근무처가 여러 곳인 경우에도 그 합계가 주 28시간 이내이어야 합니다. 「許可:資格外活動許可書に記載された範囲内の活動」 (허가: 자격외활동허가서에 기재된 범위 내의 활동)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격외활동허가서(9페이지 참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⑨ 신 청 란	체류기간 갱신허가신청 종이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중인 경우에는 이 칸에 기재됩니다. 또한, 신청 중인 분은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또는 신청결과가 나올 때까지 ②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⑩ 후일 교부인	입국 시에 체류카드가 교부되는 공항은 신치토세 공항, 나리타 공항, 하네다 공항, 중부 공항, 간사이 공항, 히로시마 공항 및 후쿠오카 공항입니다. 그 이외의 공항 등에서는 여권에 「체류카드 후일 교부」라고 기재됩니다. 이 경우, 중장기 체류자가 구시정촌에 주거지를 신고하면 출입국관리청에서 해당 주거지로 체류카드를 우송합니다.

체류자격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체류자격

해당 예 (직업 등)

●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

영 주 자	법무대신(법무부장관)으로부터 영주허가를 받은 자 (특별영주자 제외)
일본인의 배우자 등	일본인의 배우자·친자·특별양자
영주자의 배우자 등	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및 일본에서 출생한 후 계속해서 체류하고 있는 친자녀
정 주 자	일본계 3세, 제삼국 정착난민, 중국 잔류 일본인 등

● 취업이 허가되는 체류자격 (활동 내용이 특정된다)

외 교	외국 정부의 대사, 공사, 총영사, 대표단 구성원 등 및 그 가족
공 용	외국 정부의 대사관·영사관의 직원, 국제기구 등에서 공공 업무로 파견된 자 및 그 가족
교 수	대학교수 등
예 술	작곡가, 화가, 저술가 등
종 교	외국의 종교단체에서 파견된 선교사 등
보 도	외국의 보도기관의 기자, 카메라맨
고 도 전 문 직	고도의 전문적 능력을 갖춘 자
경 영 · 관 리	회사의 경영자·관리자
법 률 · 회 계 업 무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의 료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등
연 구	정부 관계기관이나 기업 등의 연구자
교 육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어학교사 등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계공학 기술자, 통역인, 디자이너, 민간기업의 어학교사, 마케팅 업무 종사자 등
기 업 내 전 근	외국의 사업소에서 전근한 자
개 호	개호복지사
흥 행	배우, 가수, 댄서, 프로 스포츠선수 등
기 능	외국요리의 조리사, 스포츠 지도자, 항공기 등의 조종사, 귀금속 등의 가공직 등
특 정 기 능	특정산업분야(개호, 빌딩 청소, 소형제 산업(뿌리 산업), 산업기계 제조, 전기·전자 정보 관련 산업, 건설, 조선·해양 산업, 자동차 정비, 항공, 숙박, 농업, 어업, 음식료품 제조업, 외식업)에 종사하는 자
기 능 실 습	기능실습생

● 취업이 허가되지 않는 체류자격

문 화 활 동	일본문화 연구자 등
단 기 체 재	관광객, 회의 참가자 등
유 학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전수학교, 각종 학교 등의 학생
연 수	연수생
가 족 체 재	체류 외국인이 부양하는 배우자·자녀

● 취업 여부는 지정된 활동의 내용에 의한다

특정 활동 법무대신(법무부장관)이 개개의 외국인에 대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 (외교관 등의 가사 도우미, 워킹 홀리데이, 대학 등 졸업 후에 취업활동을 하는 계속 취업활동자, 경제협력 협정에 따른 외국인 간호사·개호복지사 후보자 등)

해당 예는 대표적인 직업을 기재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해당하는 직업이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가까운 출입국관리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외활동허가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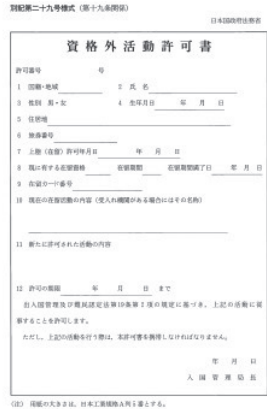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 이외의 분은 체류자격에 규정된 활동 외에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는 ①증명 도장 스티커(여권에 부착) 또는 ②자격외활동허가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류카드의 뒷면에도 기재됩니다(7페이지 참조).

견본·①



견본·②



유학생 등, 체류카드의 취업제한 여부란(6페이지 참조)이 「就労不可」(취업 불가)인 분의 자격외활동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체류자격	1주일 동안의 취업 가능 시간	교육기관이 학칙에서 정하는 장기 휴업기간의 취업 가능 시간
유학	28 시간 이내	1일당 8시간 이내
가족체재		
특정 활동 (계속 취업활동자 또는 그자와 관련된 가족체재 활동을 하는 자)		
문화 활동	허가 내용을 개별적으로 결정	

※단, 풍속영업점 등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스넥, 바, 유키장(겜블장), 러브호텔, 댄스 홀 등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기타 확인 서류

체류카드 외에 체류자격이나 취업활동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상륙허가 증명 도장

공항 등에서 새로 일본에 입국(상륙)이 허가된 외국인의 여권에 부착됩니다.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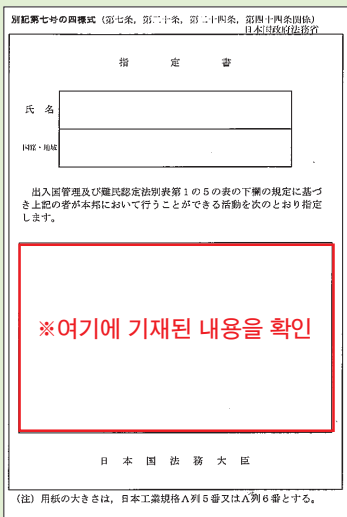


② 지정서

체류자격이 「특정기능」이나 「특정활동」등인 분에게 교부됩니다. 지정서에는 일본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등이 기재됩니다.

단, 지정서를 취득해도 취업할 수 없는 분도 있으므로, 기재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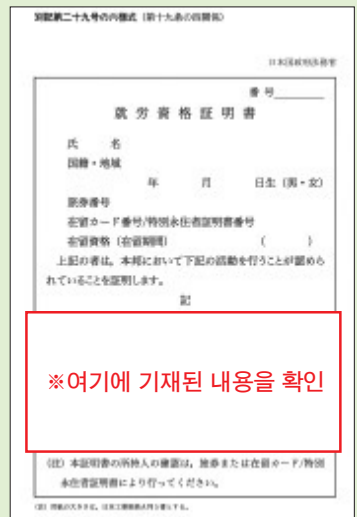


③ 취업자격증명서

취업이 허가된 외국인의 신청에 의해 교부됩니다.

사업주는 이 증명서를 통해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어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견본



가방면이란?

가방면이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위반 혐의로 강제 퇴거 수속 중인 사람이나 강제 퇴거가 이미 결정된 사람이 본래라면 출입국관리청의 수용시설에 수용되어야 하는데, 건강상의 이유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변의 구속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방면된 사람(피가방면자)은 가방면 허가서가 교부되지만, 가방면 허가는 체류자격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방면 허가서 뒷면에 「직업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 금지」**라고 조건이 첨부된 경우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방면 허가서에 이 조건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라도 취업 가능한 체류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분을 제외하고,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견본·앞면


別記第六十七号様式 (第四十九条関係)

(表) 番 号 ○○第29-00号
年 月 日 2019年5月10日

日本国政府法務省

仮 放 免 許 可 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51条第2項の規定により、仮放免します。



1 氏 名 Taylor Carly

2 生 年 月 日 1985 年 1 月 1 日

3 國 籍 ・ 地 域 ○○国

4 住 居 地 東京都港区港南5丁目5番30号

5 仮放免の条件:裏面に記載のとおり。

出入国在留管理庁 入国審査官部長

出入国在留管理庁主任審査官

入 管 太 郎

署 名

(注) 用紙の大きさは、日本工業規格A列4号とする。

견본·뒷면

(裏)

仮 放 免 の 条 件

(1) 住居
表記住居地に同じ

(2) 行動範囲
住居地の都道府県及び○○出入国在留管理局出頭の際の出頭経路

(3) 出頭を命じられたときは、指定された日時及び場所に出頭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4) 仮放免の期間
平成30年5月10日から平成30年○月○日○時まで

(5) その他
職業又は報酬を受ける活動に従事できない。

注 意

ア 住居を変更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入国審査官部長又は主任審査官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イ 旅行等の理由により行動範囲を拡大する必要があるときは、あらかじめ入国審査官部長又は主任審査官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ウ 上記の条件に違反したときは、仮放免を取り消し、保証金の全部又は一部を没収することがあります。

エ 出頭の際は、本許可書を持参して下さい。

여기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

고용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체류카드 교부 대상자

체류기간 내

취업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

-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 영주자의 배우자 등

취업 제한이 있는 체류자격

- 교수 ○예술 ○종교 ○보도 ○고도전문직
- 경영·관리 ○법률·회계업무 ○의료 ○연구 ○교육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내전근 ○개호 ○흥행 ○기능

취업 제한이 있는 체류자격

- 특정기능

취업 제한이 있는 체류자격

- 기능실습

원칙적으로 취업 불가인 체류자격

- 문화활동 ○유학 ○가족체재

취업 여부가 지정서의 내용으로 결정되는 체류자격

- 특정활동
- (워킹 홀리데이, 취업활동 중인 분 등)

취업 불가인 체류자격

- 연수

대상 외

체류기간 내

취업 제한이 있는 체류자격

- 외교 ○공용

취업 불가인 체류자격

- 단기체재

체류기간 초과

특별영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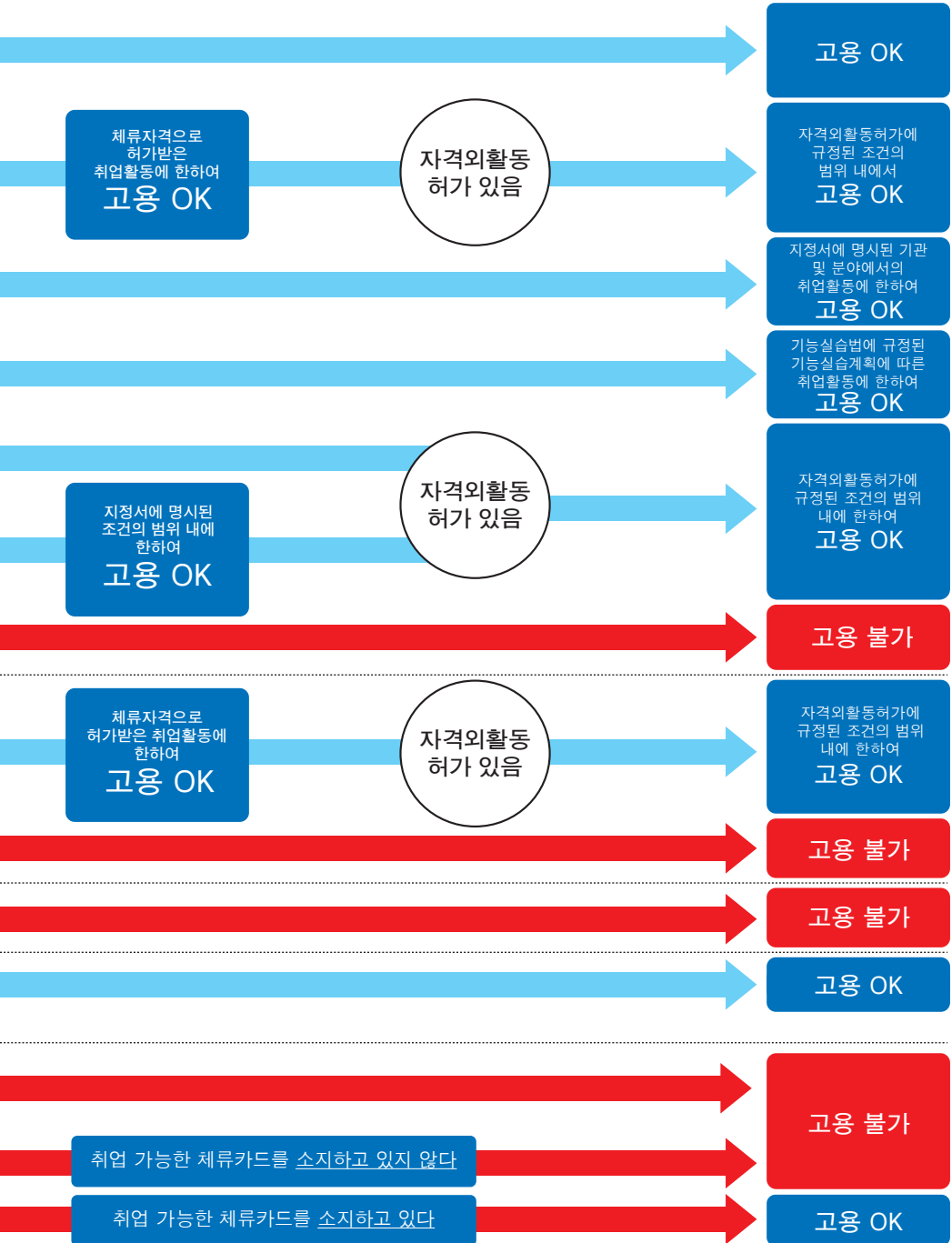
※특별영주자에 대해서는 체류카드가 교부되지 않고, 특별영주자 증명서가 교부됩니다.

피가방면자

가방면 허가서의
「가방면 조건」
란을 확인

「직업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
금지」라는 기재사항 있음

「직업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
금지」라는 기재사항 없음



고용 후의 신고

외국인 고용상황 신고제도

모든 사업주는 「노동시책의 종합적인 추진 및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직업생활의 충실 등에 관한 법률」(노동시책 종합추진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특별영주자」 및 체류자격 「외고」, 「공용」인 분을 제외)의 고용 또는 이직 시에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이름,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을 확인하고,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소홀히 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외국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외국인
신고처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소를 관할하는 헬로워크	해당 외국인이 근무하는 사업소 시설(점포, 공장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헬로워크
신고 기한	고용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서 의 제출 기한과 동일 (다음 달 10일까지) 이직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서 의 제출 기한과 동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	고용, 이직의 경우 모두 다음 달 말일까지

인터넷에 의한 전자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상황 신고 시스템

검색



<https://gaikokujin.hellowork.mhlw.go.jp/report/001010.do?action=initDisp&screenId=001010>

체류 신청 절차의 온라인화

출입국관리청은 체류 신청 절차의 온라인화를 시작했습니다.

대상 체류자격	대상 신청절차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자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별표 제 1의 체류자격(외고, 특정기능, 단기체제는 제외)	① 체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② ① 과 동시에 하는 재입국허가 신청 ③ ① 과 동시에 하는 자격외활동허가 신청	외국인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다음과 같은 분들 ① 외국인을 적절하게 고용하고, 외국인 고용상황 신고를 이행하고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소속기관의 직원 ② ①의 소속기관에서 의뢰를 받은 변호사·행정서사

온라인으로 수속하려면 사전에 이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체류 신청 온라인 시스템

검색



<http://www.immi-moj.go.jp/tetuduki/zairyukanri/onlineshinsei.html>

불법 취업자를 고용하면

법 적 제 재

불법 취업 조장죄

취업이 허가되지 않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그 고용을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그 병과입니다.

※외국인인 사업주가 불법 취업 조장행위를 하면 **강제 퇴거**의 대상이 됩니다.



사 회 적 제 재

기업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노력이 사회적 주목을 끄는
가운데, 불법 취업자의 고용이 발각된 경우, 소비자,
거래처, 업계 단체 등으로 부터의 신용·신뢰를 잃고

기업 이미지가 악화

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불법취업자인 줄 모르고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A 불법취업자인 줄 모르고 고용했다 하더라도, 체류카드의 확인을 소홀히 한 점 등의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체류카드 등을 잘 확인하여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 외국인을 고용한 후나 외국인이 퇴직한 후, 어딘가에 보고할 필요가 있나요?

A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특별영주자」, 「외교」 및 「공용」은 제외)를 고용한 경우나 외국인이 이직한 경우는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소홀히 할 경우, 3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실직하여 당사의 「통역·번역업무」 직종에 지원하였습니다. 고용해도 괜찮을까요? 또한 전직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나요?

A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통역·번역업무」로 전직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출입국관리청의 허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외국인은 전직한 사실을 출입국관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전직의 경우는 전직한 직장의 업무 내용이 체류자격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청에 「취업자격증명서」를 신청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당사에서 고용한 「기능」의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체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체류기간이 지나버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고용 가능합니까?

A 체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가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나오지 않을 경우는 기존의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을 경과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존의 체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할 수 있으므로, 고용해도 괜찮습니다. 단, 체류기간 만료일 이후에 해당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기존의 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해당 처분 결과의 통지에 맞게 하십시오.

외국인 고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외국인에 관한 각종 문제나 상담은
아래 문의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상담은

도쿄도 노동 110번	0570-00-6110
신주쿠 외국인 고용 지원·지도 센터	03-3204-8609
도쿄 외국인 고용 서비스 센터	03-5339-8625

□ 체류자격·체류카드·자격외활동허가 등, 절차에 관한 문의는

외국인 체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	0570-013904
외국인 종합 상담 지원 센터	03-3202-5535

□ 도쿄도의 외국인 상담은 「도민의 목소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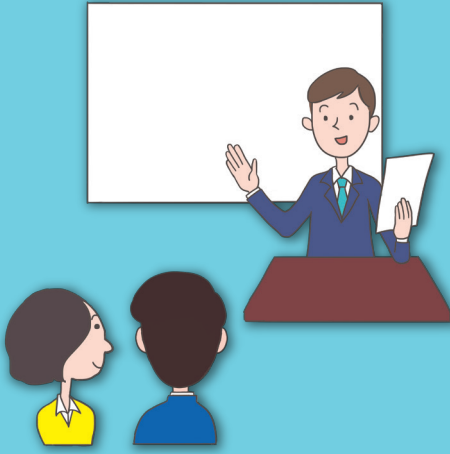
영어 (월요일부터 금요일)	03-5320-7744
중국어 (화요일·금요일)	03-5320-7766
한국어 (수요일)	03-5320-7700

□ 불법 체류자에 관한 정보는 도쿄 출입국관리국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도쿄 출입국관리국	03-5796-7256
-----------------	--------------

□ 관련 홈페이지 안내

법무부	http://www.moj.go.jp/
출입국관리청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kan_index.html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
도쿄 노동국	https://jsite.mhlw.go.jp/tokyo-roudoukyoku/home.html



도쿄도에서는 사업주 및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불법
취업 방지를 계발하기 위해
강사를 무료로 파견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부담 없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매뉴얼은 도쿄도 도민안전추진본부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매뉴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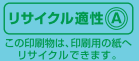
[http://www.tomin-anzen.metro.tokyo.jp/chian/
chiankaizen/gaikokujin/koyoumanyuaru/index.html](http://www.tomin-anzen.metro.tokyo.jp/chian/chiankaizen/gaikokujin/koyoumanyuaru/index.html)



발행: 도쿄도 도민안전추진본부 종합추진부 치안대책과
〒163-8001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2-8-1 전화 03-5388-2279

레이와 0년(2019년) 11월 발행

등록번호 (31) 36



この印刷物は、印刷用の紙へ
リサイクルできます。